

BNK 업앤업(Up & Up)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▶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『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▶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▶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▶ 상품명 : BNK 업앤업(Up & Up) 외화정기예금
- ▶ 상품특징 :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,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.

2 거래 조건

- 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**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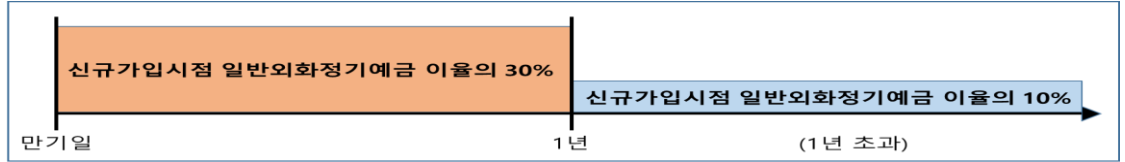
(2025.06.17 현재, 단위 : 연, 세전)

구 분	내 용					
가입대상	▪ 제한없음					
상품유형	▪ 정기예금					
가입금액	▪ 미화 1,000 불 상당액 이상					
계약기간	▪ 12 개월(월단위)					
가입통화	▪ 미국달러화(USD), 일본엔화(JPY), 유로화(EUR) (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)					
이자지급시기	▪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					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▪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이자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▪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					
기본이율	▪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(USD, 거주자, 만기일시지급식, 12 개월, 연이율(%))					
	1 개월	2 개월	3 개월	4 개월	5 개월	6 개월
	3.59130%	3.61070%	3.63000%	3.64940%	3.66880%	3.68820%
	7 개월	8 개월	9 개월	10 개월	11 개월	12 개월
	3.70750%	3.72690%	3.74630%	3.76560%	3.78500%	3.80440%

만기후이율
및
산출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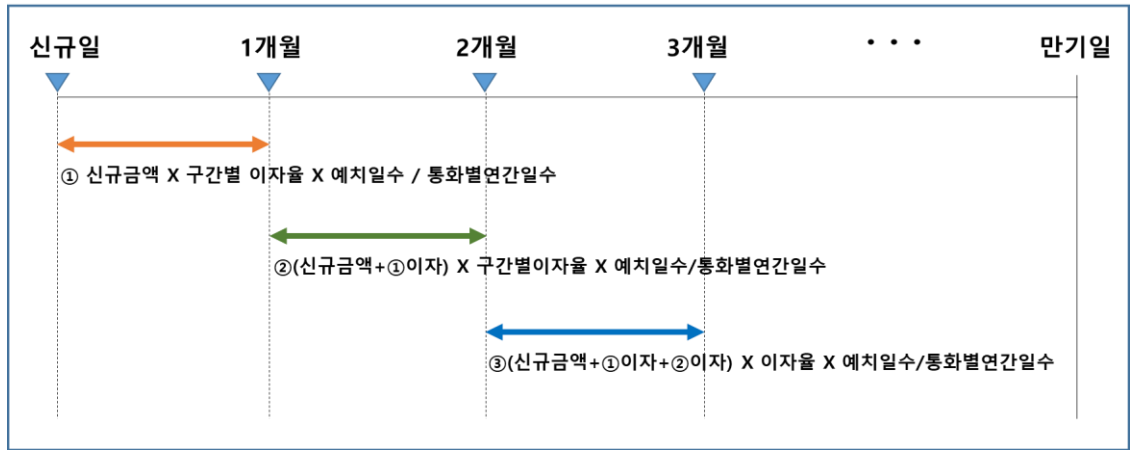
-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
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

경과기간	이율
만기후 1년 이내	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%
만기후 1년 초과	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%



만기이자
산출근거

-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
예시) 1년제, 만기일시지급식 (만기해지 가정 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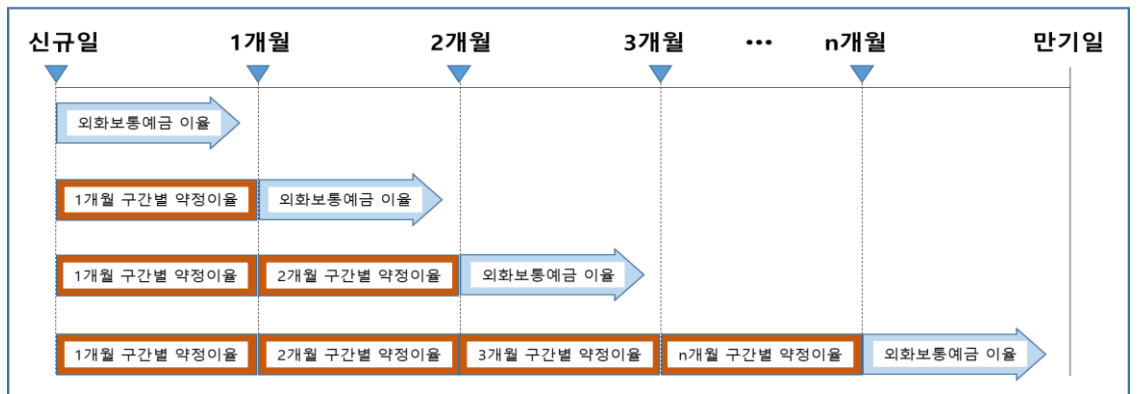


※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

※ 통화별 연간일수:미국달러화(USD)는 360 일, 일본엔화(JPY)·영국파운드화(GBP)는 365 일

중도해지이율
및
산출근거

- 1개월 미만 : 외화보통예금이율
- 1개월 이상 :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,
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



계약해지방법

-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연계 ▪ 제휴
서비스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예금자보호여부

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 억원까지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세제혜택

불 가

-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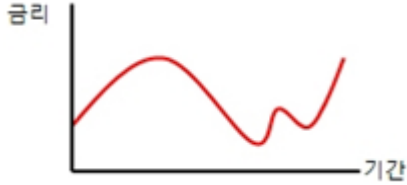
재예치	불 가	▪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.
분할인출	불 가	▪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.
양도 및 담보제공	가 능	▪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.
자료열람 요구권		▪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▪ 은행은 법령, 제 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해지권		▪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▪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휴면예금 및 출연		▪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▪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
3

유의 사항

- ▶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▶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(신규입금 포함)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(송금 보내실 때 환율)을 적용합니다.
- ▶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(송금 받으실 때 환율)로 합니다.
- ▶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.
- ▶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▶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▶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

구 분	고정금리	변동금리
운용형태		
특 정	■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	■ 일정주기(3,6 개월 등) 마다 예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
장 점	■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	■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
단 점	■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	■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

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6200, 1544-62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busanbank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<https://www.fcsc.kr>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내 용
압 류	▪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▪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▪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 연	▪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▪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▪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문의사항 및 민원상담	영업점	당행 홈페이지 '영업점 찾기' 참조	 BNK 부산은행
	고객센터	1544-6200/1588-6200	
	인터넷 홈페이지	www.busanbank.co.kr	
분쟁조정	금융감독원	국번없이 1332	
	e-금융민원센터	www.fcsc.kr	
상품 개발부서	외환사업부	051-661-4654	